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3.5.1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제1항	■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 *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추가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 (8시간 → 6시간) ■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 (3개월 → 6개월)
별표 14 별표 23 별표 25	■ 시설기준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 창고 설치 및 반제품 보관 허용 * 일반음식점의 객실 내부에 침대·욕실 설치 금지 * 집단급식소 조리장과 떨어진 장소의 객석 추가 설치 허용
별표 17 별표 23 별표 24	■ 식품접객업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당일 제공 허용 - 당일생산·당일제공 시 관련 증명서 6개월 보관 의무 *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

2. 해당 개정령은 '23.5.19.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18부, 중앙행정기관 17청, 중앙행정기관 5처, 17개 시도 위생과, 지방자치단체, 6개 지방청장
(54개 전부서), 본부(54개 전부서)

주무관	이경민	수석전문관(서 기관)	김홍태	식품안전정책 과장	전결 2023. 5. 19. 최대원
-----	-----	----------------	-----	--------------	------------------------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정책과-5084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안전
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16 팩스번호 043-719-2000 / kmlee0507@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